

2026년 충청남도 주력산업(자동차부품·반도체)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모집 안내 공고

충청남도는 (재)충남경제진흥원, (사)충남산학융합원,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도내 자동차·반도체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6년 충청남도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사업」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8일

충청남도지사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충청남도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주력산업 근로자·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
- 대상별 신청기간
 - (기업) 2026. 6. 1.(월) ~ 6. 12.(금)
 - (근로자) 2026. 6. 8.(월) ~ 6. 26.(금)
- 지원대상 : 도내 자동차(부품)·반도체 산업* 중소·중견기업 및 청년** 근로자
 - *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: C20, C22, C23, C24, C25, C26, C27, C28, C29, C30 ** 만19~39세(2026. 1. 1.기준)
- 지원내용

신청대상	수행기관	인원	지원금	지원대상 및 내용
기업	충남북부상공회의소	20개사	<고용환경개선지원> 1,6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해당산업 기업 • (내용) 환경개선금 지원(안전시설 보강 등)
근로자	(재)충남경제진흥원	1,800명	<적금지원> 월 10만원 2년 26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24개월 초과~60개월 이하 청년 재직 근로자 • (내용) 적금 지원 12개월(120만원) ※ 동일대상자 '27년 지원(총 24개월 260만원)
근로자	충남산학융합원	452명	<월세지원> 월 30만원 6개월 18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신규입사 청년 재직 근로자 • (내용) 주거비 지원 6개월 (180만원)

II

신청 안내

- (필수) 수행기관별로 게시된 각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맞는 작성서식으로써 신청

신청대상	수행기관	지원금	모집공고 및 신청방법
기업	충남북부상공회의소	<고용환경개선지원> 1,6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고)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홈페이지 - https://cbcci.korcham.net/front/user/main.do ※ 경로 :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 ○ (신청) 방문 또는 이메일(saltlike@naver.com) ○ (문의) 041-559-5770
근로자	(재)충남경제진흥원	<적금지원> 월 10만원 2년 26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고)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 - https://www.cepa.or.kr/main/main.do ※ 경로 : 알림마당>공지사항 ○ (신청) 온라인 (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) - https://www.cnsp.or.kr/ ※ 경로 : 사업공고>일자리지원>사업신청 ○ (문의) 041-404-1426~7
근로자	충남산학융합원	<월세지원> 월 30만원 6개월 18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고) 충남산학융합원 홈페이지 - https://ciuc.or.kr/ ※ 경로 : 홈페이지>알림 및 소식>사업공고 ○ (신청) 온라인 (모아폼) - https://moaform.com/q/iI3nKO ○ (문의) 041-357-8717

- 지원대상(자동차부품·반도체)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

※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 방법 :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 토탈서비스 (<http://total.comwel.or.kr>)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 및 공장등록증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,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등으로 확인

- 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
- 신청자(기업)는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필요에 따라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본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유사 사업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